

제 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 2-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

1. 계약기간

-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의 신체기능별로 “복지용구 급여확인서”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계약을 할 수 있으며, 대여품목에 한하여 계약기간은 대여 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,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 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병원에 입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는 본인이 대여비용의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. (단, 병원 입원 시에는 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매트리스, 경사로(실외), 배회감지기는 계속 사용가능함)
- ④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복지용구 품목, 적용금액,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.

2. 준수사항

-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-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. (단, 계약서에는 기간,급여의 종류, 급여비용, 비급여, 개인정보보호, 분쟁해결,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.)

3. 이용절차

- ① 신청접수 :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/ 건강관리공단, 구청,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 기관과 협조 -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
- ② 욕구사정 :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③ 서비스 계약체결 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※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※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한다.
- ④ 서비스 제공 : 복지용구 대상자에게 신청한 복지용구를 제공한다.
- ⑤ 사후관리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,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등 (대여제품에만 해당함)

제 2-2조 계약목적

: 계약목적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용구로서 복지용구 급여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.

제 2-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- ①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
- ②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가격은 급여기준 등 고시된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
- ③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,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,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.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한다.
- ④ 복지용구의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, 설치비, 철거비,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비용,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부담 시킬 수 없다.
- ⑤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.
- ⑥ 연 한도액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매 1년으로 한다.
- ⑦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.
- ⑧ 급여비용 본인부담률(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)은 다음과 같다.
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수급자	0% 부담
	60% 감경대상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	6% 부담
	40% 감경대상자	9% 부담
	일반 대상자	15% 부담

- ⑨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.

제 2-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1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 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 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 - ③ 인정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 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 - 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2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 - ① 수급자의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 -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 -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제 2-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다음은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,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시
-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③ 이용료(본인부담금)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